

●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4 - 60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그 결과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생협력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 업체명 : (주)리스페이스이레 (사업자번호 : 221-81-37817)
- 대표자 : 김○욱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8, 3층 77호(수진동, 나눔빌딩)

2. 처분사항

- 과태료 1,000,000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 2025.2.28.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생협력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 상생협력법 제4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4. 기타사항

가.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목 내지 마목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마. 납입고지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044-204-7041)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